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나. 의안번호: 제331호

다. 제출일자: 2022. 10. 17.

라. 회부일자: 2022. 10. 21.

2. 제 안 사 유

○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신규법령(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안 제3조의2).

나. 기금 명칭을 당초 기후변화기금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변경
(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8조).

다. 기금 용도 추가(안 제5조제11호~제20호) 및 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제4항).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2. 9. 8. ~ 9. 28.)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검 토 의 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만료(~'22.12.31.)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 정부(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신설('22.1.1.)에 맞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며,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와 신규 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존속기한 연장

○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의 '22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이 지나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

다만,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안건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존속기한 연장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기금 명칭 변경 및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안 제명과 제1조, 제3조 및 제8조 등은 기금 명칭을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1항[1]에 따라 정부(기획재정부)가 '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임.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용어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으로,

기금 명칭 변경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가스상 물질의 화학식들은 국제표준[2]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음.

3) 기금 용도 추가

○ 안 제5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창출, 인력 양성, 융자·투자, 교육·홍보, 국제협력,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를 현행 조례 제5조에 추가한 것이나,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가된 내용은 상위법의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임.

---

1)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 략)

2)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_S), 과불화탄소(PFC_S), 육불화황(SF_6)

<안 제5조의 주요 수정안 예시>

개정안	수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1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 1의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건설 2.~8. (생략)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2.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17.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8.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9.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융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융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